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¹⁾

김 병 권 訳
(치안연구소 경감)

第1編 總 則

第1章 法 例

제 1 조 공공질서를 보호유지하고 사회안녕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 2 조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의 처벌은 행위시 본법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3 조 행위후 본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처분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행위인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① 중화민국 영토내에서 본법을 위

반한 경우에 본법을 적용한다.

② 중화민국 영토외의 중화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본법을 위반한 경우는 중화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한 것으로 논한다.

제 5 조 이상, 이하, 이내라고 칭하는 경우는 그 숫자도 본 숫자에 계산한다.

제 6 조 본법 규정의 해산명령, 검사명령, 금지, 혹은 저지는 서면으로 해야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할 시는 구두로 할 수 있다.

第2章 責 任

제 7 조 본법을 위반한 행위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처벌한다. 다만, 과실인 경우는 구류에 처하지 못하며, 그 형을 감경할 수

1)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으로 우리나라의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

있다.

제 8 조 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1. 만 14세 미만의 자
2. 심신 상실자

② 만 14세 미만의 자가 본법을 위반한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람에게 관리교육하게 할 수 있고, 관리교육할 사람이 없는 때는 소년 또는 아동복지기구에 보내 수용할 수 있다.

③ 심신상실자가 본법을 위반한 경우는 그 감호인에게 감호하게 할 수 있고, 감호인이 없거나 감호불응시는 요양소에 보내 감호하거나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 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만 14세이상, 만 18세 미만인 자
2. 만 70세 초과인 자
3. 심신미약 또는 농아자

② 전항 제1호의 사람은 처벌의 집행이 완료된 후 법정대리인 또는 기타 그에 상당하는 사람에게 관리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3호의 사람은 처벌의 집행이 완료된 후 감호인에게 감호하게 할 수 있고, 감호할 사람이 없거나 감호불응시는 요양소에 보내 감호하거나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 만 18세 미만의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가 그 법정대리인이나 감호인의 관리교육 또는 감호의 소홀로 인하여 본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외에, 본법위반행위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이나 감호인을 처벌한다. 다만, 그 처벌은 과태료(罰緩)나 경고(申誡)로 한한다.

제 11 조 법령에 의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현재의 불법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자기 또는 타인의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불가항력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본법을 위반한 경우는 각각 처벌한다. 타인을 이용하여 실행한 경우는 이용한 행위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 16 조 타인을 교사하여 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 17 조 타인의 본법 위반행위를 방조한 경우,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 18 조 ① 특종공상업경영의 대표, 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업무상 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영업의 책임자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특종공상업은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과 유관한 영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내무부가 정한다.

第3章

제 19 조 ① 처벌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구류: 1일 이상 3일 이하 - 법에 의하여 가중시는 합하여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폐업명령
3. 영업정지 : 1일 이상 20일 이하
4. 과태료(罰鍰) : NT²⁾ 300원 이상 3만원 이하 - 법에 의하여 가중시는 합하여 NT 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몰수(沒入)
6. 경고(申誡) : 서면이나 구두로 한다.

② 폐업명령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제 20 조 ① 과태료는 처분확정 익일부터 10일 이내 완납해야 한다.

② 처벌된 자가 경제사정으로 즉시 완납할 수 없는 경우는 3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지체당기의 완납기일을 남은 금액의 완납일로 한다

③ 과태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기관은 구류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태료 완납기내에, 피처벌 자는 구류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 ① 과태료의 구류로의 전환은 NT

300원 이상 900원 이하를 1일로 환산한다. 다만 구류로 전환된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과태료 총액환산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태료 총액과 5일의 일수를 비례하여 환산한다.

③ 구류로의 전환이 하루를 채우지 못하는 나머지는 계산하지 않는다.

④ 구류로의 전환기내에 과태료를 납입한 경우, 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재결에서 정한 표준에 의하여 구류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22 조 ① 아래의 물건은 몰수(沒入)한다.

1. 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생기거나 득한 물건

2. 금제품

② 전항 1호의 몰수한 물건은 행위자가 소유한 경우에 한하고, 제2호의 물건은 행위자의 것인지를 불문하고 몰수(沒入)한다.

③ 불법위반 행위에 사용된 물건은 행위자의 소유에 한하여 몰수(沒入)할 수 있다. 다만, 몰수(沒入)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제 23 조 몰수(沒入)는 기타처벌과 병행하여 선고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 기타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

2) NET TAIWAN DOLLAR로 한국화폐대비 약 30배임.

- 2. 행위자가 도망한 경우
- 3. 금제품

제 24 조 ① 본법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는 각각 처벌한다. 다만 경찰기관이 통지서를 송달하거나 긴급 통지하기 전에 같은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개의 행위를 논하나, 그 처벌을 가중할 수 있다.

② 1개의 행위로 2개 이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중한 죄로 처벌하며, 그 위반이 같은 조항의 규정인 경우는 무겁게 처벌한다.

제 25 조 본법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는 각각 처분하고 집행한다.

다만, 집행전에 확정된 수개의 처분은 아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다수의 구류 처분을 과하는 경우는 병과하여 집행하되, 합하여 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다수의 폐업명령 처분은 그 영업장소가 동일한 경우 하나로 집행하며, 영업장소가 다른 경우는 병과하여 집행한다.
3. 다수의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는 병과하여 집행하며, 동일 영업 장소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합하여 2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폐업명령과 영업정지의 처분은 그 영업장소가 동일한 경우 폐업 명령만 집행하고, 영업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병과하여 집행한다.
5. 다수의 과태료 처분은 병과하여 집행하며, 합하여 NT 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구류로 전환한다면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6. 다수의 몰수(沒入) 처분의 경우 병과하여 집행한다.

7. 다수의 경고(申誡) 처분의 경우, 한차례에 병과하여 집행한다.

8. 異 종류 처벌의 처분은 병과하여 집행한다. 그중 폐업 명령과 영업정지가 있는 경우는 4호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26 조 본법에 의한 처벌의 집행을 완료하고 3개월내에 다시 본법의 위반이 있는 경우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 27 조 본법을 위반한 행위자가 그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수하여 처분을 받을 경우는 그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 28 조 본법을 위반한 사건은 양형시 일체의 상황을 참작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며 양형 경중의 표준으로 해야 한다.

1. 위반의 동기 목적
2. 위반시 받은 자극
3. 위반의 수단
4. 행위자의 생활상황
5. 행위자의 품행
6. 행위자의 지식정도
7.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8. 행위자의 의무위반의 정도
9. 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손해

10. 행위후의 태도

제 29 조 ① 본법을 위반한 행위의 정황이 가련한 경우, 그 처벌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의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 30 조 본법 처벌의 가중 또는 감경의 표준은 아래와 같다.

1. 구류 또는 과태료의 가중 감경은 본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2. 처벌의 가중 또는 감경으로 인하여 구류가 1일에 못미치거나 과태료가 NT 300원에 미달하는 나머지 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3. 처벌의 감경으로 인하여, 구류가 1일에 못미치거나, 과태료가 NT 300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경고로 전환하거나 면제한다.

第 4 章 時 效

제 31 조 ① 본법을 위반한 행위가 2개월을 지난 경우, 경찰기관은 신문하거나, 처벌할 수 없으며, 법원에 송치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기간은 본법을 위반한 행위가 성립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그 행위가 연속 또는 계속되는 상태인 경우는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32 조 ① 본법을 위반한 행위의 처벌로 영업정지, 과태료, 몰수(沒入), 경고하는 경우, 처분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은 경우는 집행을 면제하고, 구류, 폐업명령을 하는 경우는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은 경우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 과태료의 분할납부로 연체한 경우, 전항의 3개월의 기간은 연체한 당기 최종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연체를 구류로 전환한 경우 법원이 구류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은 경우는 집행을 면제한다.

第 2 編 處 罰 節 次

第 1 章 管 轄

제 33 조 본법을 위반한 사건은 행위지, 행위자의 주소, 거소 또는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경찰기관이 관할한다.

제 34 조 중화민국 영토외의 중화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본법을 위반한 경우, 선박본적지 항공기출발지 또는 행위후 정박지의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경찰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 35 조 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그 관할 구역내에서의 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관할

권을 가진다.

② 지역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상급경찰기관은 관할과출소(警察所 또는 警察分駐所) 권한을 주어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專業 경찰기관은 내무부의 심사비준을 거쳐 그 관할구역내의 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그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 36 조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은 본법위반 사건을 처리하되, 경찰관할 구역 및 실제 수요에 따라 簡易廷과 普通廷을 나누어 설치한다.

제 37 조 ①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簡易廷(이하 간이정이라 칭한다)은 법관 1인의 독임으로 행한다.

②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普通廷(이하 보통정이라 칭한다)은 법관 3인의 합의로 행한다.

제 38 조 본법을 위반한 행위가 형사법률이나 소년사건처리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될 경우는 검사나 소년법정에 송치하여 형사법규나 소년사건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행위가 영업정지, 폐업명령, 과태료 또는 몰수(沒入)해야 하는 부분은 본법 규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第 2 章 調 査

제 39 조 경찰기관은 경찰관이 발견, 민중의

제보, 행위자의 자수 또는 기타 사정으로 본법 위반 행위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제 40 조 증거로 삼거나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잘 보관해야 한다. 다만, 처분 확정후 보관물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환부하며, 소유자 소지인 또는 보관자가 없는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1 조 ① 경찰기관은 본법위반 행위의 사실을 조사할 경우, 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증인이나 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아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통지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 또는 거소
2. 사유
3. 출석일시, 장소
4.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는 취지
5. 통지기관의 서명

③ 피통지인의 성명이 불명확하거나 기타 사유로 필요시 분별함에 충분한 특징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본적,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혐의자 신문은 먼저 통지의 사유를 알리고,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확히 신문하고 항변의 기회를 준다.

⑤ 혐의자는 신문중 또는 조사중 대리인을 위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원 또는 경찰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 42 조 본법위반의 현행범에 대하여는 경찰관은 그 행위를 즉시 제지 할 수 있으며 출석의 긴급통지를 할 수 있다. 그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강제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성명 주소 또는 거소를 확실 히 알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第3章 처 분(裁處)

제 43 조 ① 아래 각호의 사건에 대하여 경찰기관은 신문후에 계속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즉시 처분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본법 위반행위로 과태료나 경고에만 처해질 수 있는 사건
 2. 본법 위반행위로 과태료나 경고를 선택하여 처벌하는 사건
 3. 제1호, 2호의 처분과 아울러 물수를 선고하는 경우
 4. 물수만 선고하는 경우
 5. 제1호,2호의 사건의 처벌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전항의 처분서는 아래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행위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혹은 거소
2. 주문
3. 사실과 내용은 그 개요만을 기재해도 된다.
4. 적용법조
5. 처분기관과 년, 월, 일
6.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원처분서 송달의 익일부터 5일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서술하여 원처분 경찰기관을 경유하여 관할 간이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4 조 경찰기관은 상황이 경미하고 사실이 명확한 본법 위반사건에 대하여는 통지, 신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벌은 NT 1,500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고에 한한다.

제 45 조 ① 제43조 제1항에 열거한 각호 이외의 사건은 경찰기관은 신문 후 즉시 관할 간이정에 송치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찰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간이정은 처벌하지 않거나, 구류, 폐업명령, 영업정지에 처하지 않는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벌하거나 기타 처벌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제 46 조 ① 법원은 경찰기관이 송치한 불법 위반사건을 수리한 후 심문이나 조사하는 외에 신속히 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재판서는 아래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행위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또는 거소
2. 주문
3. 사실 및 이유는 그 개요만 기재해도 된다.
4. 적용법조
5. 재판기관 및 연월일
6.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 송달의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서술하며 원 재판의 간이정을 경유 동 법원 보통정에 항고 할 수 있다.

제 47 조 본법위반 사건의 상황이 중대하고 계속조사할 필요가 있고, 혐의자의 신분이 불명확하거나 고정된 주·거소가 없는 경우, 보증인 선정을 명할 수 있고, 보증인 선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잠시 유치할 수 있다. 다만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48 조 경찰기관은 본법위반의 혐의자에 대하여 합법적인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 49 조 ① 본법 위반사건의 재판서 또는 처분서 작성시 피재판인 또는 피처분인이 그 자리에 있을 경우, 이를 宣示하거나 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자리에서 재판서나 처분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그 자리에서 宣示나 선고를 하지 않거나 신문을 거치지 않고 임의처분한 사건의 재판서나 처분서는 경찰기관이 5일내에 송달해야 한다.

③ 전 2항의 재판서는 송치 경찰관서에 송

달해야 한다.

第4章 집행

제 50 조 처벌의 집행은 경찰기관이 한다.

제 51 조 본법 위반사건의 처벌은 처분확정 후 집행한다.

제 52 조 구류 확정재판은 집행통지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강제로 출석시킨다.

제 53 조 ① 구류, 유치는 각각 구류소와 유치실내에서 집행한다.

② 본법 위반혐의자가 유치된 후, 구류를 집행하는 경우는 유치된 시간을 구류의 기간에 산입하며, 과태료를 집행하는 경우는 1시간을 NT 60원으로 환산한다.

③ 본법 위반의 현행범은 긴급통지로 또는 강제로 출석한 경우, 유치기간의 계산은 경찰기관에 도착한 시로부터 한다.

제 54 조 ① 구류의 집행은 즉시부터 기산하며 24시간을 1일로 한다.

② 전항의 집행은 시간이 찻을 때 석방한다. 다만, 0시부터 8시 사이에 기간이 차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당일 8시에 석방할 수 있다.

第5章 구제

제 55 조 ① 처벌된 자가 경찰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서 송달의 익일로부터 5일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이유를 서술하고 원처분 경찰기관을 경유하여 관할 간이정에 해야 한다.

제 56 조 원처분 경찰기관은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며, 절차가 부적법하거나 이의 신청권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익일부터 3일내에 간이정에 송치해야 하며,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 57 조 ① 간이정은 이의 신청의 절차가 부적법하거나 이의 신청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는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다만, 절차의 부적법이 보완될 수 있는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명령을 내려야 한다.

② 간이정은 이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며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③ 간이정이 이의 신청에 관하여 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 58 조 재판관을 받은 자 또는 원 송치경찰기관은 간이정의 제45조 송치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동 법원 보통정에 항고할 수 있으며, 보통정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 59 조 ① 항고기간은 5일이며 재판서 송

달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항고제기는 서면으로 이유를 기재하여 간이정에 한다.

제 60 조 ① 피처벌자나 원 송치 경찰기관은 항고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포기는 서면으로 원 재판기관에 해야 한다.

제 61 조 ①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재판전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이나 항고의 철회는 서면으로 수리기관에 해야한다. 다만, 그 서류가 수리기관에 송달되기 전에는 원 처분기관에 할 수 있다.

제 62 조 항고권 포기,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철회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항고권을 상실한다.

第3編 各 則

第1章 安寧秩序妨害罪

제 63 조 ①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하의 구류나 NT 3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살상력을 가진 기계 화확제 기타 위험물을 휴대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총을 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문 창 자물쇠 혹은 기

- 타 안전설비를 열거나 파괴하는데 사용되는 공구를 휴대한 자
- 4. 살상력이 있는 물품을 방치 투척 또는 발사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게 한 자
- 5.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공공의 안녕에 영향을 미친 자
- 6. 얼굴을 위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을 놀라게하여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 7. 연소성 폭발성이 강한 물품이나 기타 위험 물품의 제조 운반 판매 저장 등 영업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 영업설비 및 방법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8. 주무기관이 금지한 기구를 제조 운반 판매 휴대 또는 공연히 진열한 경우

② 전항의 7호, 8호는 그 상황이 중대하거나 재차 위반한 경우는 영업정지나 폐업명령에 처하거나 병과한다.

제64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하의 구류나 NT 1만8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분규의 의도로 공원 역 부두 공항 혹은 기타 공공장소에서 임의로 사람을 모아 공공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고, 관할 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
- 2. 암표행위자

- 3. 차량 선박 숙박업소의 종사원이 손님을 귀찮게 하거나 강제로 적재하게 한 경우
- 4. 교통운수 종사원이 보수약정후 강제로 증액을 요구하거나 중도에 괴롭히거나 혹은 비록 약정은 않았지만 사후에 고의로 관례를 넘게 증액하는 경우
- 5. 불량조직을 주도 조종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한 자

제 65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하의 구류나 NT 1만8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폭풍이나 야간에 항해하는 것이 위험할 때의 출항금지를 위반한 경우
- 2. 병사한 것이 아니거나 병사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사체 또는 내력이 의심되는 사체에 대하여 검시를 받지 않고私人이 염장(殮葬)하거나 옮긴 경우
- 3. 정당한 이유없이 진정한 총기와 유사한 완구류 총기를 휴대하여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4. 연소성 물질을 모아두고 부주의하게 사용하거나 연소성 물질의 부근에서 쉽게 화재를 일으키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제 66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하의 구류나 NT 1만8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아편이나 마취약품 이외의 환각물질을 흡식하거나 시용한 자

- 2. 타인의 신분이나 능력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사용한 자

제 67 조 ①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하의 구류나 NT 1만2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특정인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신분을 알고도 출입을 저지하지 않고 경찰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자
2. 경찰관이 법에 의하여 조사하거나 사찰시에 그 성명 주소 또는 거소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
3. 타인이 본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경찰기관에 무고한 자
4. 타인이 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경찰기관에 허위로 증언하거나 통역한 자
5. 본법위반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
6. 타인이 본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를 위조 변조 인멸 또는 은닉한 자

② 배우자, 5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항 4호 내지 6호 행위를 한 경우는 경로로 하거나 처벌을 면제한다.

제 68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하의 구류 또는 NT 1만2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장소, 가옥부근에서 불을 피워 안전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게 한 자

2. 가옥, 공장, 회사, 공공장소 혹은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자
3. 강제로 물건을 사거나 강매 또는 財務를 강제로 요구하는 자

제 69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하의 구류 또는 NT 1만2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渡船, 교량 혹은 도로의 주무기관이 정한 통행비용을 초과하여 수수하거나 핑계로 통행을 방해한 자
2. 표없이 또는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함부로 공공 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오락장소에 출입하는데, 이를 제지하는데 복종하지 않거나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지 않는 자

제 70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하의 구류나 NT 1만2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위험한 동물을 기르며 인근의 안전에 영향을 준 자
2. 위험한 동물을 기르며 사람이 있는 도로 건축물 기타 장소에 출입하게 한 자
3. 동물을 사주하여 사람을 놀라게 한 자

제 71 조 주무기관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함부로 출입하며 이를 제지하는데 복종하지 않은 경우 NT 6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72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NT 6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공공장소 또는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데 복종하지 않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함부로 경적을 불거나 기타 경보신호를 발하는 자
3. 잡음을 내거나 심야에 소란을 피워 공공의 안녕을 방해한 자

제 73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NT 6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학교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 운동회 혹은 기타 공공 장소에서 입씨름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데 복종하지 않는 자
2. 자기가 경영하는 지역내의 통행로에 있는 하수구, 우물, 웅덩이에 복개 또는 방어물을 설치하지 않은 자
3. 화재발생시 구경함으로 인하여 구조나 처리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데 복종하지 않는 자
4. 사당, 교회, 묘비, 기타 공공기념장소나 시설을 오손한 자

제 74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NT 6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심야배회, 행적의심으로 불심검문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지에 복종하지 않아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주거나 간수인이 없는 건축물, 광갱,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 숨어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자

3. 신분이 불명한자를 수용 또는 고용하고 즉시 경찰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게 한 자
4. 경찰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변에서 초목, 잡물을 연소시켜 차량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를 주어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친 자
5. 장례 등 다중이 집결하여 이동하는 데 미리 통과노선을 경찰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공중통행에 장애를 일으킨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시체를 장사지내지 않거나, 고의로 시체로써 소란을 일으킨 자

제 75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NT 6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함부로 가로등이나 교통표지를 조작한 자
2. 가로등, 교통표지, 가로수 또는 기타 공공시설을 훼손한 자

제 76 조 ①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NT 6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전당포, 각종가공·보관·매매·수리업자가 내력이 불명한 물건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자
2. 총기 탄약 기타 폭발물을 발견하고도 경찰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자

② 전항 제1호의 상황이 중대하거나 재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업명령을 하거나 병과한다.

제 77 조 공공오락 장소의 책임자 또는 관리인이 아동이나 소년이 심야에 그 내부에 많이 모여있음을 방임하고, 경찰기관에 즉시 보고 하지 않은 경우 NT 1만5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 상황이 중대하거나 재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나 폐업명령에 처하거나 병과한다.

제 78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NT 1만5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통용하는 지폐를 복사, 축소 확대 복사하여 배포 혹은 판매한 자
2. 통용하는 지폐 경화의 모방품을 제조, 배포 또는 판매한 자

제 79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NT 3천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고에 처한다.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고 그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2.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그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골목이나 도로를 가로질러 옷이나 물건을 말리고, 이를 제지하는데 복종하지 아니한 자
4. 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제지하는데 복종하지 아니한 자

第2章 善良한 風俗妨害罪

제 80 조 ①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하의 구류나 NT 3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1.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과 간음하거나 숙박한 자
2. 공공장소 또는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매음이나 매음을 매개할 목적으로 호객행위를 한 자

② 전항의 자가 1년 내에 3회 이상의 확정 처분을 받은 경우, 구류에 처하고, 그 집행이 완료된 후 6개월 내지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교양기관에 보내 수용 기술을 배우게 하는 선고를 병과하여 할 수 있다.

제 81 조 매음을 매개한 자는 3일 이하의 구류나 NT 3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82 조 ①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하의 구류 또는 NT 1만2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공공장소 또는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동냥하고 이를 제지하는데 복종하지 않는 자
2. 공공장소 또는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극을 공연 또는 방영하거나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한 자

② 전항 제2호의 공연 또는 방영한 장소는 극장 공연장 나이트 클럽 카바레 혹은 이와 같은류의 장소로 그 상황이 중대하거나 재차 위반한 경우는 영업정지나 폐업명령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 83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NT 6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고의로 타인의 침실 욕실 화장실更衣실 (更衣室)을 훑쳐보아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자
2. 공공장소 또는 공공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함부로 나체로 하거나 요염한 자세를 취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지하는데 복종하지 않은 자
3. 외설스러운 언어, 거동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성을 희롱한 자

제 84 조 공공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공이 출입할 수 없는 직업적 도박 장소에서 도박한 자는 NT 9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第3章 公務妨害罪

제 85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일이하의 구류나 NT 1만2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공무원의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 협박 혹은 모욕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량한 언사나 행동을 한 자
2.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을 하는데 다중이 모여 소란을 떨어 공무 집행을 저해한 자
3. 고의로 담당공무원에게 재해를 거짓 신고한 자

제 86 조 정부기관이나 기타 행정기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품을 팔고, 이를 제지하

는데 복종하지 않은 자는 NT 3천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고에 처한다

第4章 타인의 신체 재산 妨害罪

제 87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일이하의 구류 또는 NT 1만 8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타인을 폭행한 자
2. 상호 구타한 자
3. 구타할 의도로 집합한 자

제 88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NT 3천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타인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타인의 동물 선박 혹은 기타 물건을 풀거나 타인의 차량 선박을 함부로 운전한 자
2. 함부로 타인의 수목 채소 과일 화훼 또는 기타 식물을 벌채한 자

제 89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NT 3천원이하의 과태료나 경고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최면술을 걸거나 약물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미행하고 이를 제지했음에도 복종하지 않은 자

제 90 조 아래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NT 3천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고에 처한다

1. 타인의 문패 간판 혹은 기타 정당한 광고나 표지를 오손한 자
2. 허락없이 타인의 교통기구 담벽 주택 기

타 건축물에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낙서
또는 각인한 자

제 91 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NT
1천5백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고에 처한다

1. 타인의 신체 의복 또는 물건을 심하게
오손한 자
2. 고의로 타인 전원을 짓밟거나 이에 가축
을 몰아 넣은 자
3. 타인의 토지내에서 함부로 낚시 또는 목
축을 하고, 이를 제지했음에도 복종하지
아니한 자
4. 타인의 토지 내에 함부로 토석을 캐거나
취수 또는 폐기물을 버리고, 이를 제지
하는데 복종하지 않은 자

第 4 編 附 則

제 92 조 법원이 본법 위반사건을 수리시 본
법 규정외의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 84 조 ① 본법 위반사건 처리 시행규칙은
행정원이 사법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구류소 설치 시행규칙, 유치실 설치관리
시행규칙, 몰수물품 처리 규칙은 행정원에
서 정한다.

제 94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